

전자인법안 (김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87
----------	-------

발의연월일 : 2024. 5. 27.

발 의 자 : 김 웅 · 이용우 · 조용천
유의동 · 오영환 · 홍정민
강병원 · 유경준 · 김희국
김영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작동 결과에 대한 법적 규정은 부족한 상황임. 특히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행동을 설계자나 사용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리, 사자 등 기존의 법리로는 대응할 수 없음.

이에 보험이나 무과실책임 부과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으나 법적 분쟁이 더욱 심해지고,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슈퍼컴퓨팅, 클

라우딩과 같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영세함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음.

결국,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한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인공지능 거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으로 하고, 향후 회사법에 준하는 주식전자인법,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 함(안 제2조).

나.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3조).

다.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함(안 제6조).

마. 전자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고, 이사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함(안 제7조).

바. 전자인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인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전자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인에 대한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외부환경을 센서나 환경과의 데이터 교환으로써 스스로 인식하고 데이터의 분석이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학습을 통해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그에 따라 동작하는 기계장치로서 생물학적으로 생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인”이란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말한다.
3. “전자인 리콜”이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인을 공급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전자인 철회”란 전자인의 배포, 전시 및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금지된 행위) ① 전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이용될 수 없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없거나 인식이 어려운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과 인지를 상당하게 변화시켜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
 2. 아동·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징 등을 악용하여 그 집단의 행동이나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
 3. 사람들을 특정한 분류로 구분하여 각 집단을 불평등하고 불리하게 대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4.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수집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개인의 행동이나 신뢰도를 예측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다만, 실종자 수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 탐색 및 범죄 혐의자 추적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자인은 먼저 등기된 다른 전자인의 기술적 독자성을 침해할 수 없다.
- ③ 전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 및 대표자는 전자인 리콜과 전자인 철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전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주무관청이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의 청구에 의해 직권으로 전자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전자인 성립의 준칙) ①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인공지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전자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자인설립의 등기) ① 전자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등기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등기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또는 전자적 주소
4. 설립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이사의 성명, 주소
7.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③ 주식을 발행하는 전자인의 등기사항은 「상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자인의 권리능력)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조(전자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전자인은 자율성 범위 내의 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자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8조(전자인의 주소) 전자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 주소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전자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전자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10조(전자인의 설립의 취소) 전자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전자인의 합병) ① 전자인은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전자인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전자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전자인은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③ 전자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자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및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전자인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

제12조(전자인의 정관) ① 전자인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소재지 또는 전자적 주소
4. 전자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적 주소로 갈음할 수 있다)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② 주식을 발행하는 전자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전자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2.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1주의 금액
3. 전자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제13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전자인 설립 시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14조(전자인의 공고) 전자인의 공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정관의 효력)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16조(전자인채의 발행) ① 전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자인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자인채의 발행과 종류 등에 관해서는 「상법」의 사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인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8조(전자인의 정관변경) ① 전자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자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조(등기사항의 변동 등기)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 장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관

제22조(이사) 전자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23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전자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전자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24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전자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전자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

② 전자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20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자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전자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전자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2조(감사) 전자인은 정관으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4장 해산

제34조(해산사유) 전자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전자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35조(파산신청) 전자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전자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청산전자인) 해산한 전자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38조(청산인) 전자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39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41조(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제41조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43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4조(채권신고의 공고) 채권신고, 청산과 해산 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